

#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법적 지위)과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이 현 진\*

목 차	
I. 서 론 .....	321
II.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과 선행연구 .....	323
1. 비트코인의 개념과 특성	
2. 선행연구	
III. 연구 방법 .....	330
1. 연구 모형	
2. 표 본	
IV. 실증분석 결과 및 과세방안 모색 .....	333
1. 실증분석 결과	
V.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 및 과세방안 모색 .....	336
1.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	
2. 과세방안 논의	
3. 비트코인의 세무행정 문제	
VI. 결 어 .....	344

\* 충남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세무사

\*\* 투고일 : 2018. 2. 14. 1차수정일 : 2018. 3. 27. 게재확정일 : 2018. 7. 20.

**< 국문초록 >**

정부는 최근 투기성이 짙어진 비트코인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시사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품목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성격(지위)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또는 법적 지위)을 알아보고자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외부 요인인 경제 요인과 내부 요인 간에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비트코인은 외부 경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내부 요인에 의하여만 영향을 받았다. 이는 비트코인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의 위험 성향에 따라 투자 또는 투기성 자산이 됨을 나타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표준편차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인 코스피(KOSPI) 지수와 코스닥(KOSDAQ) 지수 변동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비트코인 가격 변동은 코스피(KOSPI)의 14배, 코스닥(KOSDAQ)의 10배 정도로 컸다. 이는 분석기간인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동안에 비트코인 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 고(高)위험과 투기 현황이 짙어짐을 나타냈다. 본 논문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을 화폐기능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과세방안으로 부가가치세법은 면세(금융범위)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인세의 경우는 현행 규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지고 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 경우 화폐(거래의 매개체)로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과세 예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 규정하기 위한 실증 분석하는 데 있으며 이에 따른 과세 방안 및 세무행정을 논하는 데 있다.

▶ **주제어** :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비트코인의 부가세, 비트코인의 법인세, 비트코인의 소득세

## I. 서 론

정부는 최근 투기성이 짙어진 비트코인을 과세하기로 시사하였다. 새로운 유형의 품목을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한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이나 투자 등의 활동에서 발생한 금전적 이득을 일정부분을 취하는 것이므로 합당한 근거 없는 조세 부과는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선행 작업으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을 먼저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법적 성격(지위)이 과세 여부 및 세무행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태생적 성격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이다. 그러나 사용 과정에서 화폐로 이용하기보다는 투자자산의 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웹상에서 복잡한 수학문제를 풀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외에 거래소를 통하여 구매가 가능하여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이 생기게 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은 비트코인을 태생적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또는 사용자들의 이용 형태에 따른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법적 성격(지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영국<sup>1)</sup>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화폐 범주로 보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으로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교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법적 성격(지위)을 부여한 것이다. 독일은 물물교환이 가능한 금

1) 황종모·한승우, “해외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 현황”,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7호, 금융보안원, 2017, 34~36면.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미국은 주식과 같은 자산(property)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결제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성격(지위)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을 연구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하여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제 외부 요인과 투자자에 의한 내부 요인으로 나누어 실증 분석한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 원인을 알게 되면 비트코인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 법적 성격(지위)을 판단함에 있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비트코인 과세방안 및 세무행정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비트코인의 과세 방안은 실증분석을 토대로 법적 성격(지위)을 논한 후 그에 따른 과세방안, 즉 부가세·법인세·소득세 3개 세법에 관하여 과세 여부 등을 논하고자 한다. 이후 비트코인을 과세한다면 이에 발생하는 세무행정 문제를 보고자 한다. 세무행정 문제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 즉 화폐와 같은 기능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였을 때 부가세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비트코인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상점(백화점·인터넷 쇼핑몰 등)이 있으며 외국의 사례이나 비트코인을 통한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곳<sup>2)</sup>도 있다. 부가세는 공급한 가액의 10%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품 등을 구매한 자가 사업자에게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세도 함께 지급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급가액을 비트코인으로 할 경우 이에 부가세인 공급가액의 10%인 비트코인을 부가세로 하여야 하지만 해당 부가세는 비트코인이기에 세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이런 세무행정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

2) 조선일보, “아파트 분양대금,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6/201803060246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6/2018030602466.html)(작성일 : 2018. 3. 7.).

요하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취득가액 산정문제이다. 비트코인은 3가지의 형태, 즉 채굴에 의한 취득, 거래소를 통한 취득, 상품 등 교환으로 취득(결제를 통한 취득)으로 얻을 수 있다. 거래소를 통한 취득은 매매가격이 있어 취득가액 산정에 어려움은 없으나 채굴에 의한 취득과 상품 등 교환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비트코인을 과세할 경우 공평과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세무행정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에서 비트코인의 개념과 특성 및 선행 연구를 알아본 후 III.에서 연구 모형과 표본, IV. 실증분석 결과, V.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 및 과세방안 논의를 한 후 마지막 VI.에서 결어로 구성된다.

## II.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과 선행연구

### 1. 비트코인의 개념과 특성

#### 가. 비트코인의 개념과 특성

##### (1) 비트코인의 도입 배경 및 개념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속에 미국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화량을 증대함에 따라 실물자산의 가치 하락하는 부작용이 생겨 통화량을 제한하여 가치하락이 되지 않은 화폐를 만들자는 취지로 고안된<sup>3)</sup> 가상

3) 전해원, “한탕에 올인…비트코인에 빠진 대한민국”, 『방송기자』 제40권, (사)방송기자연합회, 2018, 46~47면.

화폐의 한 일종이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란 인터넷상의 가상공간 안에서 전자적 형태로 거래되는 화폐로 지폐나 동전과 같은 현금처럼 실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용자끼리 연결되어 별도의 비용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를 말한다.<sup>4)</sup>

## (2) 비트코인의 특성

### (가) 기존 사이버머니와의 차이점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라는 점에서 2000년 대 초반 싸이월드의 도토리나 온라인 게임상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등과 같은 사이버머니 한 종류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기존 사이버머니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품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① 구매 가치

기존 사이버머니의 경우는 웹상에서 1개당 정해진 금액을 구매하여 게임 아이템과 같은 가상 속의 물건 등을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구매 가치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경우는 거래소를 통하여 구매할 경우 구매 가치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즉, 1 BTC를 구매하려고 준비하는 시간 동안 그 가치는 변동되어 10분 전에 구매하려고 했던 금액과 10분 후인 현재 구매가 이루어진 시점의 구매 금액은 다르게 된다. 이는 기존 사이버머니의 구매가치가 일정한 것과 다른 차이점이다.

#### ② 취득 방법

비트코인은 3가지 형태로 취득을 할 수 있다. 웹상에서 복잡한 수학문제를 풀어 1개의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으로 마치 금광을 채굴하여 최초의 금

4) 허영섭, “가상화폐가 도대체 뭐길래”, 『대한토목학회지』 제66권 제1호, 대한토목학회, 2018, 68면.

을 얻는 것과 유사하게 채굴을 통한 취득하는 방법과 취득한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통하여 매매를 할 수 있어 거래소를 이용한 취득 방법이 있다. 또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구매하는 경우와 같이 물물교환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기존 사이버머니가 웹상에서 법정화폐를 지불하여 취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③ 익명성 보장

기존 사이버머니는 사이버머니가 이용되는 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에 법정화폐를 지불하여 사이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이디를 이용하여 구매가 이루어졌기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거래의 경우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거래가 일어났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누가 이 거래를 하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 등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sup>5)</sup>에 비트코인이 이용될 수 있다는 잠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이버머니와도 차이가 있다.

#### (나) 법정화폐와의 차이점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화폐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화폐(Currency)에 관해서 김흥기(2014)는 상품 등을 교환하거나 유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급수단으로 정의<sup>6)</sup>하였다. 지급수단, 즉 교환 매개체를 법으로 인정한 것을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 ① 중앙개입 기관의 유무

법정화폐는 중앙기관에서 경제 요소 등을 감안하여 통화량을 발행한다.

5) 황종모·한승우, “해외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 현황”,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7호, 2017, 28면.

6) 김흥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4, 394면.

중앙기관 개입으로 통화량이 통제되기 때문에 경제 예측을 벗어난 통화정책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나 실물자산의 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오로지 시장에 참여하는 자에 의하여서만 공급이 이루어진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량도 2,100만 BTC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물 화폐와 같은 인플레이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 ② 거래 시간 및 교환 매개체 역할

법정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 결제 시간은 매우 짧다. 이는 법정화폐가 실물로 존재하기에 바로 물물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은 가상의 공간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 시간과 실물화폐와 비교하였을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법정화폐는 어느 상점이든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허용하는 상점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곧 비트코인을 허용하는 상점이 없다면 교환 매개체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 ③ 투자 여부

법정화폐는 그 자체의 금액으로 존재하기에 다른 나라와의 통화를 교환하지 않은 이상 그 금액(명목금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이는 법정화폐를 소유한 경우 이득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투자할 상품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계속 변동된다. 시세가 변동된다는 것은 이득과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하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투자 품목이 됨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화폐와는 다르다.

## 나. 각국의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 및 과세 현황

### (1) 미 국<sup>7)</sup>

미국 국세청(IRS)의 지침서를 보면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급 매개체가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보아 자산(property)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 법을 근거로 비트코인을 과세를 한다는 것으로 자산 거래의 과세 원칙에 따라 비트코인을 보유한 경우 보유한 시점의 공정가치(fair market value)를 적용하여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음을 말한다.

### (2) 영 국<sup>8)</sup>

영국은 비트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을 들어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을 민간통화(Private Currency)로 분류하였다. 이에 영국 왕립 국세청(HMRC)은 비트코인의 부가세를 폐지하고 비트코인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행 비트코인 거래 기업의 법인세는 유지하고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3) 독 일<sup>9)</sup>

독일 연방 금융감독기관(BaFin)은 비트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앙 정부 및 은행(중앙은행·상업은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독일 지급결제서비스감독법(Germany Payment Supervision Act)에 규정한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외화자산과 유사한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과세를 하고 있다.

i) 개인의 경우 채굴 당시의 비트코인 또는 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가격

7) 안성배 외 5인,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26면.

8) 황종모·한승우, 앞의 논문, 35~36면.

9) 신상화·강성훈,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73~75면.

과 매매한 비트코인 가격 간의 차이에 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되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면제한다.

- ii) 법인의 경우 비트코인을 법인 자산으로 보아 거래에 발생된 소득을 법인세로 부과한다.

#### (4) 일 본<sup>10)</sup>

일본은 2016년 5월에 가상화폐 규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상통화법(Virtual Currency Act)을 규정하여 2017년 4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본 법률안은 비트코인을 포함 가상화폐에 대하여 국가나 중앙은행에 의하여 가치가 보장되지 않아 법정화폐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제나 매매, 교환이 가능하기에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법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구입 및 거래할 때 발생하는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 거래에 따른 차익은 소득으로 보아 5~45% 누진세를 차등 적용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 2. 선행연구

비트코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가상화폐와 법정화폐와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을 규정하기가 모호하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에 관한 논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다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최근 논의된 연구로 김흥기(2014)는 비트코인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비트코인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과 거래 매개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적 성격을 모두 가진 새로운 유형의 복합적 품목이라고 하였다.<sup>11)</sup>

10) 안성배 외 5인, 앞의 논문, 14면.

11) 김흥기, 앞의 논문, 397면.

전주용 외 1인(2014)은 화폐와 금융경제학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화폐적 성격과 자산적 성격 모두 존재하나 현 시점에서는 화폐적 성격을 지닌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sup>12)</sup>

정승영(2015)은 비트코인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세법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보다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sup>13)</sup>

홍도현 외 1인(2015)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비트코인의 법적 구조를 상품 내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sup>14)</sup>

지인엽 외 1인(2016)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고 분석 결과 일부 국가에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비트코인이 투자자산으로 사용이 가능함을 나타낸 것이다.<sup>15)</sup>

Cheah, E. 외 1인(2015)은 투기 거품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비트코인은 화폐보다는 자산 성격과 유사하였으며 투기에 약해 그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sup>16)</sup>

Back, C. 외 1인(2015)은 비트코인이 투기성 자산인지 투자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제 요인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

12) 전주용·여은정, “비트코인의 이해 :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KBR』 제18권 제4호, 한국경영학회, 2014, 227면.

13) 정승영, “가상화폐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 비트코인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1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86면.

14) 홍도현·김병일,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124면.

15) 지인엽·전광명, “가상화폐와 인플레이션 헤지:비트코인 사례”,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정보통신정책학회, 2016, 49면.

16) Cheah, E. & Fry, J., Speculative bubbles in Bitcoin markets?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fundamental value of Bitcoin, *Economics letters* Vol. 130, 2015, pp.34~35.

하였다. 분석 결과 비트코인의 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 26배 많은 변동성이 나타났으며 주식에 영향을 주는 경제 외부 요인들은 비트코인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내부 요인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sup>17)</sup>

Zhu, Y. 외 2인(2017)은 VEC 모형을 사용하여 비트코인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금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과 비트코인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간에 유사한 결과를 나와 비트코인이 투기자산(speculative asset)으로서의 취급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18)</sup>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모형

비트코인은 태생적 성격은 화폐이지만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상점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가격 변동성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폐로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박(gamble)과 같은 유형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지만 손실 위험도 있는 투기성 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sup>19)</sup>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비트코인을 투자자산 또는 투기자산으로 보았다. 본 논문도 비트코인이 투자자산(또는 투기성 자산)

17) Baek, C. & Elbeck, M., Bitcoins as an investment or speculative vehicle? A first look, *Economics Letters* Vol. 22, Elsevier, 2015 pp.30~34.

18) Zhu, Y. 외 2인, Analysis on the influence factors of Bitcoin's price based on VEC model, *Financial Innovation* Vol. 3 No. 1, 2017, pp.1~13.

19) European Central Bank, "What is bitcoin?", <https://www.ecb.europa.eu/explainers/tell-me/html/what-is-bitcoin.en.html>(검색일 : 2018. 3. 26.).

인지 확인하고자 국내 경제 요인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을 판단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Baek, C. 외 1인(2015)이 미국의 외부 경제 요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하는 것과 동일하게 국내의 경제 요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가격 영향을 분석하는 것<sup>20)</sup>이다. 그러나 Baek, C. 외 1인(2015)의 연구 모형은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외부 경제 요소 중 재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요소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경제 요소와 비트코인의 관계를 분석하여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도 Baek, C. 외 1인(2015)이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BP_t = B_0 + B_1\Delta CPI_t + B_2\Delta KOSPI_t + B_3\Delta USD_t + B_4\Delta \text{실업률}_t + B_5\Delta \text{산업지수}_t + B_6\Delta \text{10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_t + B_7\Delta SPRED_t + B_8\Delta KOSDAQ_t + \epsilon_t$$

- $BP_t$  : t시점의 비트코인 가격
- $\Delta CPI$  :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 $\Delta USD$  : 달러 대 원화 환율 변화
- $\Delta \text{실업률}$  : t시점의 실업률 변화
- $\Delta \text{산업지수}_t$  : t시점의 산업지수 변화
- $\Delta \text{10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_t$  : t시점의 10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 변화
- $\Delta SPRED_t$  : t시점의 비트코인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 변화
- $\Delta KOSPI_t$  : t시점의 코스피 지수 변화
- $\Delta KOSDAQ_t$  : t시점의 코스닥 지수 변화

종속변수  $BP_t$ 는 t시점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말하고 독립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코스피(KOSPI)지수, 환율, 실업률, 산업지수, 10년 만기 국고채

20) Baek, C. & Elbeck, M., *op. cit.*, p.32.

금리와 코스닥(KOSDAQ)지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외부 경제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의 스프레드를 마지막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른 외부 7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내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다.

## 2. 표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우리나라 경제 외부 요인으로 보는 소비자 물가지수(CPI), 코스피 주가지수(KOSPI), 코스닥 주가지수(KOSDAQ), 전(全)산업생산지수, 환율, 실업률, 한국 국채 10년 금리이다. 이 자료를 사용한 근거는 Baek, C. 외 1인(2015)이 비트코인 가격의 외부 경제요인으로 사용한 미국 경제 요소를 국내 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내부 요인을 판단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스프레드(고가-저가)를 사용한 것도 동일한 이유이다.<sup>21)</sup>

데이터 자료 수집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전(全)산업생산지수, 실업률은 국가통계포털을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 지수, 한국 국채 10년 물 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환율은 하나은행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비트코인의 가격은 빗썸 거래소에서 환화로 거래하는 비트코인 가격 시세를 수집하였다. 모든 변수의 데이터의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로 월별 자료로 통일하였다.

21) Baek, C. & Elbeck, M., *op. cit.*, p.32.

## IV. 실증분석 결과 및 과세방안 모색

### 1. 실증분석 결과

#### 가. 기술통계량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코스피(KOSPI) 지수와 코스닥(KOSDAQ) 지수와의 변동성 차이를 알아보려고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비교하여 투기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분석 데이터는 정규성을 따르기 위해 로그값을 취하였다.

변 수	표준편차	왜 도	첨 도
log_KOSPI	0.07647	1.429	0.974
log_KOSDAQ	0.10558	-0.387	-0.836
log_비트코인 가격	1.04512	1.448	1.730

분석 결과 비트코인 가격 표준편차는 1.04512이고 코스피(KOSPI) 지수의 표준편차는 0.07647, 코스닥(KOSDAQ) 지수의 표준편차는 0.10558이다.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의 시장은 코스피(KOSPI)의 14배, 코스닥(KOSDAQ)의 10배의 변동성을 가진 것이다. 이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비트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에 비하여 고(高)위험과 투기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 나. 회귀분석 결과

변수들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i>B</i>	<i>SE</i>	<i>Beta</i>	<i>t</i>	<i>p</i>	<i>VIF</i>	<i>DW</i>	<i>R</i> <sup>2</sup>	<i>F</i>
(상수)	-19.898	8.904	1	-2.235	0.032		1.498	0.917	50.995** (0.000)
10년 국고채 금리	0.316	0.204	0.171	1.549	0.130	5.402			
소비자물가지수	0.230	0.097	0.315	2.367	0.023	7.862			
실업률	-0.002	0.131	-0.001	-0.017	0.987	1.527			
산업지수	0.006	0.011	0.038	0.597	0.554	1.828			
KOSP	0.001	0.001	0.205	1.609	0.116	7.197			
KOSDAQ	0.001	0.001	0.040	0.456	0.651	3.395			
환율	0.001	0.001	0.054	0.827	0.413	1.905			
log 스프레드	0.362	0.066	0.492	5.449	0.000**	3.629			

\*  $p < 0.01$ , \*\*  $p < 0.001$  ad  $R^2 = 0.899$

모형 F값이 50.99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R^2$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변동비율을 의미한다.  $R^2$ 는 91.7%으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Variation Inflation Factor(다중공선성)은 1부터 무한대 까지 수를 가지므로 1 이상부터 10 이하는 다중공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VIF는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문제가 없다.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움으로 자기상관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조건이 만족된다. 그러므로 변수에 이상은 없다. 유의수준은 0.01(99%)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1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0년 국고채 금리를 살펴보면, B의 값이 0.31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

량을 살펴보면,  $t$ 값이 1.549이고 유의확률이 0.13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B$ 의 값이 0.23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2.367이고 유의확률이 0.02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을 살펴보면,  $B$ 의 값이  $-0.002$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0.017$ 이고 유의확률이 0.98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全)산업지수를 살펴보면,  $B$ 의 값이 0.00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0.597이고 유의확률이 0.55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KOSPI)지수를 살펴보면,  $B$ 의 값이 0.00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1.609이고 유의확률이 0.11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KOSDAQ)지수를 살펴보면,  $B$ 의 값이 0.00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0.456이고 유의확률이 0.65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을 살펴보면,  $B$ 의 값이 0.00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0.827이고 유의확률이 0.41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경제 요인으로 보는 항목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log\_스프레드$ 를 살펴보면,  $B$ 의 값이 0.36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5.449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492이므로  $\log\_스프레드$ 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0.492(49.2%) 증가하게 된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됨을 나타낸다.

## V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 및 과세방안 모색

### 1.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

본 논문의 실증 분석 결과 비트코인은 외부 경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내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는 내부 요인인 비트코인 투자자의 성향에 투기성 자산이 될 가능성을 가진 투자 자산임<sup>22)</sup>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본기간(2014. 1.~2017. 12.) 동안 비트코인은 코스피(KOSPI)의 14배, 코스닥(KOSDAQ)의 10배의 변동성을 가져 고(高)위험과 투기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 가. 화폐로서의 비트코인

전술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화폐보다는 투자자산(또는 투기자산) 성격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비트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법정화폐에 비하여 거래하는 데 시간이 길고 허용하는 상점도 적어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정화폐는 가격이 안정적이나 비트코인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해킹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지급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한된 상점이기는 하나 비트코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향후 비트코인을 허용하는 상점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이 지급수단인 화폐로써 사용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22) Baek, C. & Elbeck, M., *op. cit.*, p.323.

## 나. 무형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기에 새로운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에 의하여 투기성으로 갈 소지가 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실증 분석 결과임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투기위험이 있어 기본가치(fundamental value)를 0으로 보았던 Cheah, E. 외 1인(2015)<sup>23)</sup>의 연구 결과에 따른다. 가치가 없는 자산은 K-IFRS 제1038호 규정된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되어야 하며 자산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기본가치(fundamental value)가 없기 때문에 향후 경제적 효익을 기업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에 때문에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의 형태로 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 다. 금융투자상품(Finance investment instrument)으로서의 비트코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면 금융투자상품(Finance investment instrument)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여 권리를 얻는 것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손실이 날 가능성(투자성을 말함)이 있는 상품을 말한다.<sup>24)</sup>

Glaser, F. 외 4인(2014)에 의하면 비트코인에 구매한 자의 대부분의 동기는 비트코인의 시세차익을 통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투자<sup>25)</sup>한다고 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 원인은 내부 요인, 즉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따라 가격이 영향이 되므로 투자자가

23) Cheah, E. & Fry, J., *op. cit.*, pp.34~35.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25) Glaser, F. 외 4인, Bitcoin-asset or currency? Reveling User's hidden intentions, *Twenty Second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 Tel Aviv, 2014, p.1.

고위험이면 가격 변동이 크고 저위험이면 가격 변동이 적기에 투자한 시점에서 가격 예측을 할 수 없다. 이는 비트코인을 투자한 투자자는 이득을 얻기 위해 비트코인의 권리를 취득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으로 인하여 손실이 될 가능성도 내포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의된 금융투자상품(Finance investment instrument)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라.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또는 법적 지위) 결론

비트코인은 태생적 성격이 화폐이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이나 부동산, 서비스 등을 거래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제한된 상점이만 비트코인을 허용하는 상점이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서도 비트코인을 허용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 비트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여러 문제점도 있으며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시장 또한 투자 대상의 하나로 보아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자가 대부분이다. 이는 비트코인이 채굴에 의한 취득 외에 거래소를 이용한 취득도 할 수 있어 그 과정 중에 시세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실증 결과에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장은 외부 경제 요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내부 요인에 의하여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위험성향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이는 투자한 시점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의된 금융투자상품(Finance investment instrument)에 충족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는 기존 틀에 맞추어 정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유형의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는 비트코인이 화폐의 기능이 있음과 동시에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는 화폐 기능이 있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2. 과세방안 논의

비트코인을 화폐 기능이 있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이 과세방안을 논할 수 있다.

### 가. 부가가치세 문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한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sup>26)</sup>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과 같은 유체물과 광업권이나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은 무체물을 재화로 보고 있다.<sup>27)</sup>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의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서면 법규과-920, 2014. 8. 25.)와 서면-2014-부가-21616(2015. 12. 29.) 질의 회신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하지 않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고 하였다.<sup>28)</sup> 즉, 부가세법 규정과 예규를 통합해서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과세 근거는 재산적 가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적 가치는 게임머니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를 판결한 대구고등법원 2011누1277(2011. 10. 14.)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와 관리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매도한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sup>29)</sup> 즉, 이익을 남기지 않고 손해가 나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

26) 부가가치세법 제4조.

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28) 서면 법규과-920, 2014. 8. 25.; 서면-2014-부가-21616, 2015. 12. 29.

29) 대구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누1277 판결.

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익을 얻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을 얻는 것과 손해를 보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비트코인이 손해를 볼 때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을 볼 때만 과세한다면 동일한 과세 물건에 다른 세금 잣대를 씌우게 되어 과세형평에 부합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과 예측이 이익과 손해 여부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어렵다는 점은 주식 시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위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또는 법적 지위)을 화폐 기능이 있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Finance investment instrument)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비트코인을 통한 물건 등을 구매가 가능 하는 동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 시장에 참여하는 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가격 예측이 불가능하여 손실의 위험도 구매하는 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국세청 예규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 되지 않고 그 이외의 금융상품(Finance investment instrument)으로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 자체를 그 소유자 배타적 지배와 관리하면서 반드시 이익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보다는 주식과 유사한 새로운 금융상품(Finance investment instrument)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기에 비트코인을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 범위(면세 범위) 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나. 법인세 문제

법인세는 현재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포괄주의라 함은 법인의 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 구매한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큰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매각하였다면 법인의 순소득이 증가되어 법인세가 과세된

다. 이는 현행 세법으로도 비트코인 소유 후 매각에 따른 가치 증가분을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별도 개정이 없더라도 과세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 다. 소득세 문제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이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투자상품(Finance investment instrument)으로 보면 현행 소득세법에서 과세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 이는 소득세법이 열거된 품목에 한해서 과세할 수 있는 세법이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비트코인을 구매한 자가 배당이나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이자 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과세할 수 없으며, 비트코인 구매와 매각을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있어 사업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 과열이 진행되는 경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책 목적상 사용되는 조세로 현행 비트코인의 투기 양상이 과열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목적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품목에 상장 주식(일부)과 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금융투자상품(Finance investment instrument)으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개정을 통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통하여(지급수단)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화폐(가상 화폐)로 보아 과세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비트코인의 세무행정 문제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이 있는 금융투자상품(Finance investment instrument)으로 분류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과세를 한다면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부가세 문제와 취득가액 산정에 따른 세무행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가. 부가세 문제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10%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담세자(擔稅者)는 구매자(소비자)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공급가액을 지급할 때 부가세도 함께 지급을 한다. 만약,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부가세도 함께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10BTC를 지급한다면 부가세는 1BTC도 사업자에게 함께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사업자는 1BTC를 부가세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을 세금을 납부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가에 납부한다면 그 가격이 변동되므로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세는 제공한 재화 및 용역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를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하는 소비자로부터 원화로 받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나. 취득가액 산정 문제

비트코인은 3가지 취득이 가능하다. 즉, 웹상에서 복잡한 수학문제를 풀고 채굴하는 취득방법과 거래소를 통한 취득, 지급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경우로 취득을 할 수 있다. 거래소를 통한 취득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비트코인을 최초 취득한 경우와 지급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았을 경우 취득가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하여 세무행정 문제가 발생한다.

### (1) 채굴에 의하여 비트코인을 최초 취득한 경우

비트코인을 최초 취득한 경우 취득을 위해서 지출한 컴퓨터 구매 비용 및 전기료, 인건비 등의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다. 그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합리적이거나 비트코인 채굴자가 이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을 번거로운 일 뿐더러 세금을 줄이려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릴 유인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르면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 경우 시가로 산정하게끔 되어있다. 시가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하며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 거래되는 금액을 시가<sup>30)</sup>로 의미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시가는 거래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를 통한 가격은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형성된 가격은 객관적 가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굴에 의한 비트코인 취득가액은 채굴 시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볼 수 있다.

### (2)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받았을 경우

비트코인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 수단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취득시점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과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시가와 차이가 있음에 따른 문제이다.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에 의하면 교환에 따른 취득가액은 취득한 자산의 시가가 제공한 자산의 시가보다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31)</sup>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3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문단 26.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업자의 비트코인 취득가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있을 경우 해당 시가를 비트코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게 되고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하였을 때에 취득한 시점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VI. 결 어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여러 부작용도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과세를 포함한 규제를 시사했다. 그러나 합당한 근거 없는 조세 부과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사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합리적 근거로 조세를 부과를 위해서는 과세 대상에 대한 법적 성격(또는 법적 지위)이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또는 법적 지위)을 알아보고자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비트코인은 외부 경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내부 요인에 의하여만 영향을 받았다. 이는 비트코인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의 위험 성향에 따라 투자 또는 투기성 자산이 됨<sup>32)</sup>을 나타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의 표준편차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인 코스피(KOSPI) 지수와 코스닥(KOSDAQ) 지수 변동을 살펴해보았다. 분석 결과 비트코인 가격 변동은 코스피(KOSPI)의 14배, 코스닥(KOSDAQ)의 10배 정도로 컸다. 이는 분석기간인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동안에 비트코인 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 고(高)위험과 투기 현상이 짙어짐을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또는 법적 지위)을 규정하였다. 비트

32) Baek, C. & Elbeck, M., *op. cit.*, p.33.

코인은 제한된 상점이지만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의 법적 성격(지위) 안에 규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본 논문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지위)는 화폐 기능이 있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Finance investment instrument)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론지었다.

이를 근거로 비트코인의 과세방안을 모색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비트코인이 화폐로 이용할 때는 과세 대상은 아니나 금융투자상품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식과 같은 면세범위 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는 현 규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며 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무행정 문제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또는 법적 지위)을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경제요인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비트코인의 과세방안 및 세무행정도 모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參 考 文 獻

### 1. 국내 문헌

- 김흥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4.
- 신상화·강성훈,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안성배 외 5인, “가상통화 관련 주요군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Vol. 18 No.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전주용·여은정, “비트코인의 이해 :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KBR』 제18권 제4호, 한국경영학회, 2014.
- 전혜원, “한탕에 올인...비트코인에 빠진 대한민국”, 『방송기자』 제40권, (사)방송기자연합회, 2018.
- 정승영, “가상화폐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 비트코인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1집 제1호, 한국국세조세협회, 2015.
- 지인엽·전광명, “가상화폐와 인플레이션 헤지 : 비트코인 사례”,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정보통신정책학회, 201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통합본 제1호, 2016. 10.
- 허영섭, “가상화폐가 도대체 뭐길래”, 『대한토목학회지』 제66권 제1호, 대한토목학회, 2018.
- 홍도현·김병일,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 황종모·한승우, “해외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 현황”,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7호, 2017.

### 2. 국외 문헌

- Back, C. & Elbeck, M., Bitcoins as an investment or speculative vehicle? A first look, *Economics Letters*, Vol. 22, Elsevier, 2015.

- Cheah, E. & Fry, J., Speculative bubbles in Bitcoin markets?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fundamental value of Bitcoin, *Economics letters*, Vol. 130, 2015.
- Galsler, F. 외 4인, Bitcoin-asset or currency? Reveling User's hidden intentions, *Twenty Second Europe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 Tel Aviv, 2014.
- Zhu, Y. 외 2인, Analysis on the influence factors of Bitcoin's price based on VEC model, *Financial Innovation*, Vol. 3 No. 1, 2017.

### 3. 인터넷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이택스코리아, <http://www.etaxkorea.net/>

삼일인포마인, <http://www.samili.com/>

청와대 국민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

European Central Bank, [https://www.ecb.europa.eu/explainers/tell-me/html/what-is-bitcoin\\_en.html/](https://www.ecb.europa.eu/explainers/tell-me/html/what-is-bitcoin_en.html/)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6/201803060246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6/2018030602466.html)

## &lt;Abstract&gt;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Taxation of Bitcoin**

Lee, Hyun Jin\*

The government has recently suggested paying taxes on speculative bitcoin. However, in order to tax a new type, the legal nature (status) must first be defined.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ice of Bitcoin in order to identify the legal nature (or legal status) of the Bitcoin.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external economic and internal factors. As a result of an empirical analysis, the Bitcoin was not affected by external economic factors, but only by internal factors. This indicates that the risk tendency of the participant in the Bitcoin market is either investment or speculative. It also looked at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current Bitcoin price and volatility of the nation's equity markets, KOSPI and KOSDAQ. As a result, the volatility of the Bitcoin was 14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KOSPI and the KOSDAQ 10 times higher. This indicates that the Bitcoin market has a higher risk and speculation status than the stock market during the analysis period, January 2014 to December 2017. Based on thes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e legal nature (status) of bitcoin should be considered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with monetary function. Accordingly, the VAT Act should include the Bitcoin in the tax exemption (the type of finance). In the case of corporate taxes, a basis for taxation with the current regulations is provided. It is also possible to levy a corporate tax on Bitcoin even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As for income tax, it was deemed reasonable to tax it within the type of the transfer income tax. However, in such a case, it is desirable to make a tax exception when a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is made by using Bitcoin as the curren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define the legal nature (status) of bitcoin, and discuss the taxation measures and tax administration accordingly.

▶ **Key Words** : bitcoin, the legal nature of bitcoin, bitcoin's corporate tax, bitcoin income tax, VAT on bitcoin

---

\* Ph. D. Student, Department of Account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